

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3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 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8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9. 1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립)

가. 개정이유

○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“옥내급수관”, “개량” 정의 신설(안 제2조)

2)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근거 신설(안 제38조)

3) 중수도시설 관련 조항 삭제(안 제6조의3, 제6조의4)

- 「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와 중복 규정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2)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

3) 합 의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- 개선의견[복지지원과-22918호(2024. 6. 7.)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◦제37조(요금 등의 감면 대상) 제1항 ⇒ 조례 개정 사항에 미 포함	◦제37조(요금 등의 감면 대상) 제1항 ⇒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제 37조(요금 등의 감면 대상) 제1항의 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명 이상인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 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: 불수용 ⇒ 요금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사항으로 요금감면 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4) 기타사항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49호
- 가) 예고기간: 2024. 5. 30. ~ 6. 19.(21일간)
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상위법령 조항 정비 및 옥내급수관 및 개량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(안 제6조의3 ~ 제6조의4) 중수도시설 설치관리 등 및 중수도 배관색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, 「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8조) 급수시설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,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